

#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기본적 존엄과 가치 등이 지적(知的) 공동체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이를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이 인간으로서, 사회구성원으로서, 연구자로서, 학자로서,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는 평등한 지적(知的) 공동체로 유지·발전하기 위하여 본 권리장전을 마련하였다.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 구성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개인 존엄권, 자기 결정권 및 학업연구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아울러, 대학원생의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학내 공동체의 연구 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루고자 한다.

### 제2조 (정의)

- ① 본 권리장전에서 ‘대학원’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교육대학원, 전문대학원 모두를 포함한다.
- ② ‘대학원생’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해당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.
- ③ ‘학업 및 연구’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.
- ④ ‘연구 출판물’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며 학위과정 동안 연구하여 이를 학위과정 내 혹은 이후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.
- ⑤ ‘대학원장’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장, 특수대학원장, 교육대학원장, 전문대학원장 모두를 포함한다.
- ⑥ ‘구성원’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부생, 대학원생 및 교수, 직원, 연구원 등 숙명여자대학교에 직·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.
- ⑦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아니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.

### 제3조 (적용범위)

-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, 자퇴,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.
- ② 교수 및 직원,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숙명여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

### 제4조 (인간의 존엄과 가치)

- ① 대학원생은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을 통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인격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숙명여자대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학부생 등 모든 구성원과 상호 동등

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, 숙명여자대학교는 대학원생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.

- ③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**제5조 (평등권)**

대학원생은 성별, 국적, 인종, 연령, 장애, 종교, 임신과 출산,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아니한다.

#### **제6조 (학업 및 연구 보장 권리)**

-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.
- ③ 대학원생은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해 학업 및 근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#### **제7조 (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)**

-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평가자는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 (지식재산권)**

-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 내지 연구 실적물에 공저자로 등록할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(제1저자)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.

#### **제9조 (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)**

- 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연구와 학업은 타의에 의해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보다 우선되지 아니한다.
-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,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#### **제10조 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**

-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대학원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가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생은 대학원에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대학원생이 제2항에 따라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, 대학원장은 그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인정될 경우 제반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변경과정, 혹은 지도교수 변경 이후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### 제11조 (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)

-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학업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병결, 휴학 등의 절차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, 학교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12조 (조교활동에 대한 권리)

- ① 대학원생은 조교나 연구사업 연구원 등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으며, 공정한 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조교 및 계약직 등으로 근무 시 학교로부터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 등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본교는 근로활동에 대해 사전에 제시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을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거나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13조 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

- ① 대학원생은 학교의 장학금, 예산, 지출 등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,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.

### 제14조 (학문 및 표현의 자유)

- ① 대학원생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이는 학문적 사안에 대해 독립된 의견(대학원생의 학과에서의 이론적, 방법론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등), 제도적 방침에 대한 의견, 의심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복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다.
- ②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교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.

### 제15조 (구성원으로서의 참여권)

- ① 대학원생은 교수 및 직원과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적(知的)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내에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, 학업·연구·조교근무와 관련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6조 (그 밖의 권리)

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## 제 3 장 대학원생의 의무

### 제17조 (구성원으로서의 의무)

대학원생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학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18조 (학업 및 연구에 대한 의무)

- ①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통해 대학원의 핵심가치를 고취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19조 (연구윤리에 대한 의무)

-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하여 위조, 변조,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
- ②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집행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.

#### 제20조 (시설사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)

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학습공간,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, 학내 안전관리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.

### 제 4 장 대학원생의 보호

#### 제21조 (해결절차)

- 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사건 처리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사건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22조 (기구운영)

- ① 본교는 교수, 직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인권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본교는 그 외 대학원생의 고충을 청취하여 줄 수 있는 교내 상담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본교는 인권센터와 교내 상담 기구에 대한 이용권을 대학원생에게 보장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장 보 칙

#### 제23조 (기타)

- ① 숙명여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.
- ② 본 권리장전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, 제규정을 준수하며, 본 권리장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, 제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24조 (수정 및 활용)

본 내용은 추후 대학원 학생회와 인권센터가 협의해 개정할 수 있다.